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4.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9명”을 “13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6명”을 “15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2월 25일”을 “2026년 2월 25일”로 한다.

별표 1의 강원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강원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5”를 “294”로 하고, 일반직 계 “281”을 “2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4”를 “28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656”을 “1,632”로 하고, 일반직 계 “1,656”을 “1,6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45”를 “1,621”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2024년 2월 25일”을 “2026년 2월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

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

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

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병역자원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u><신 설></u>	제10조(병역자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2. (현행과 같음) <u>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1조(입영동원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10.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u> 11. ~ 20. (생략)	제11조(입영동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 20. (현행과 같음)
제17조(상담소장) ① (생략) ② 소장은 <u>4급</u> 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7조(상담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5급</u>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u>2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25조의2(구성) ① ----- ----- ----- <u>13명</u>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9명-----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5명-----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 ----- -----.
제30조(한시정원) ① 병역관정검 사 중 참복결핵 검진을 실시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u>2024년 2월 29일</u>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 청 소속기관에 둔다.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2월 25</u> <u>일</u>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 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제30조(한시정원) ① ----- ----- ----- ----- ----- <u>2026년 2월 28일</u>----- ----- -----. ② ----- ----- ----- ----- <u>2026년 2월 25</u> <u>일</u>-----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5</u>	<u>294</u>	+9
•	•	•	
•	•	•	
일반직 계	<u>281</u>	<u>290</u>	+9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4</u>	<u>283</u>	+9
•	•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56</u>	<u>1,632</u>	-24
일반직 계	<u>1,656</u>	<u>1,632</u>	-2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45</u>	<u>1,621</u>	-2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2